

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 사유

가. 장학금관련 일부 조항 변경

학칙 제47조(장학금)

- ① 각 과정의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와 재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가사가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총장이 행한다.

나. 수업일수 및 이수 관련 일부 조항 변경

학칙 제14조(수업일수 및 방법)

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2주 이상(매학기 16주 이상)으로 한다.

학칙 제27조(이수학점)

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1주 1시간씩 한 학기간 16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 50학점, 박사 35학점이상으로 한다.

<관련근거>

• 고등교육법

제20조(학년도 등) ② 학기·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
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

제11조(수업일수)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,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 5. 8.]

제14조(학점당 이수시간)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,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8.5.28>

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7.5.8]

2. 개정 내용

가. 제47조 (장학금)

나. 제14조(수업일수 및 방법)

다. 제27조(이수학점)

3. 주요 내용

제 47 조 (장학금)

- ① 각 과정의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와 재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가사가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총장이 행한다.
- ③ 장학금의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수업일수 및 방법)

-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
- ② 총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- ③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블록수업,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7조(이수학점)

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1주 1시간씩 한 학기간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 50학점, 박사 35학점이상으로 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